



# 품목별 원산지기준(조합기준)을 파헤쳐보자

## - 홍삼 조제품을 사례로 -



- 복잡하고 난해한 원산지기준을 홍삼 조제품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 홍삼 조제품 원산지기준의 경우 일부 세번을 제외세번으로 규정, 역내산 사용 의무화
- 협정별로 다른 제외 세번의 유의사항을 해석하여 원산지 판정을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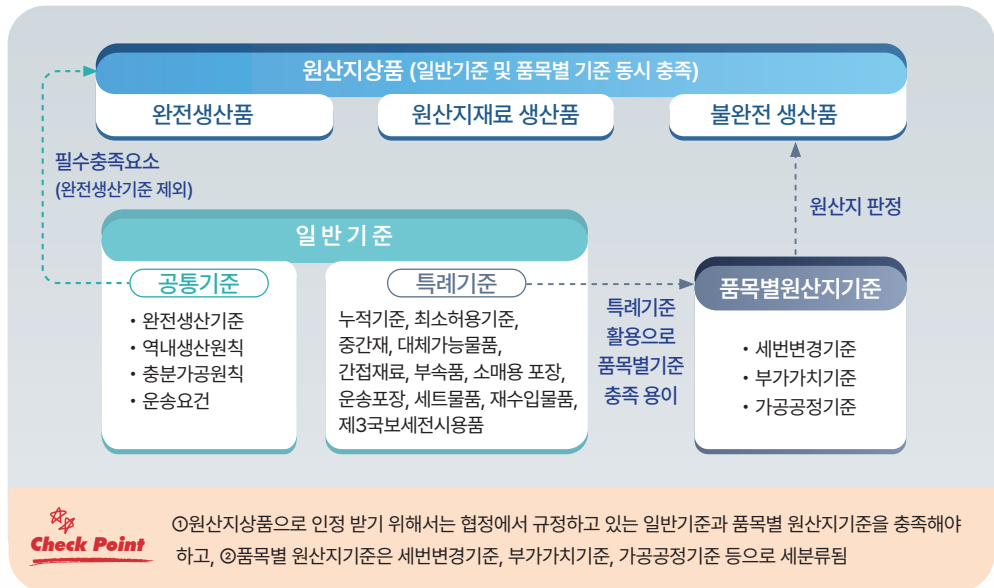
[ 글\_김세라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 (1) 개요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에 해당되어야 하고, 원산지상품이란 체약 당사국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에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 FTA 원산지기준 체계



© 자료 출처 : 한국원산지정보원 내부자료

특히 원산지기준이 단일기준이 아닌 조합기준으로 규정된 경우 해석이 더 난해하고 복잡함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합기준 사례(홍삼 조제품)를 통해 FTA 활용기업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보고자 한다.


품 목 : 홍삼 조제품

HS CODE : 제2106.90호

특 이 사 항 : 일부 세번을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함

조합(결합)기준이란 단일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하고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다.

### ● 단일기준 및 조합기준 구분

단일기준	조합기준
<p><b>세번변경기준:</b> 류변경(2단위), 호변경(4단위), 소호변경(6단위)</p> <p><b>부가가치기준:</b>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p> <p><b>가공공정기준:</b> 어류 및 식물성 생산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p>	<p>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2가지 이상 기준을 조합하고 동시에 충족</p> <p><b>예시1</b> 세번변경기준 + 제외세번(단서조합)</p> <p><b>예시2</b>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p>
<p><b>Check Point</b>  조합기준이란 단일기준 2가지 이상 기준을 조합하고 동시에 충족</p>	

## (2) 홍삼 제품류의 품목분류



홍삼을 원재료로 한 제품들은 그 형태,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품목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홍삼 원물은 제1211.20호, 홍삼농축액을 주원료로 기타 성분과 혼합하여 조제한 홍삼 조제품 물품들은 제2106.90호, 이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홍삼 음료제품들은 제2202.99호에 분류하고 있다.

### ● 주요 홍삼 제품류의 HS CODE 분류 체계

제품명	HS 코드
백삼	1211.20-1211
홍삼	1211.20-1391
홍삼캡슐	1211.20-2220
홍삼농축액	1302.19-1210
홍삼캔디	1704.90-2090
홍삼정과	2008.99-9000
홍삼절편	2008.99-9000
홍삼차(과립형)	2106.90-3021
홍삼젤리	2106.90-3029
홍삼환	2106.90-3029
홍삼비타민 <sup>1)</sup>	2106.90-3029(기타 홍삼 제품류) 2106.90-9099(기타 조제 식료품)
홍삼공지환	2106.90-9099
홍삼음료	2202.99-1000
홍삼생기력	2202.99-9000

◎ 자료 출처 : 변달수. (2024).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무역리포트, (1분기), 71.

1)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

### (3) 홍삼 제품 교역동향



대표적으로 홍삼 조제품(제2106.90호)과 홍삼 음료(제2202.99호) 제품의 수출동향('23년)을 각각 살펴보면,

(홍삼 조제품) '23년 수출액은 8억 4,728만 달러로 '22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4.4%의 비중을 차지 했다. 그 외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있다.

(홍삼제품류의 경우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주로 분류되는 6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봄)

#### ● 홍삼 조제품(제2106.90호)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730,438	1.1	2,275,861	5.0	847,282	16.0	2,182,851	-4.1
1	중국	153,566	10.9	93,765	38.2	206,449	34.4	96,255	2.7
2	일본	99,687	-16.1	35,316	-6.4	104,698	5.0	34,948	-1.0
3	베트남	95,252	32.5	9,280	28.5	103,076	8.2	13,181	42.0
4	인도네시아	63,154	-1.8	4,654	22.0	70,902	12.3	6,728	44.6
5	미국	66,690	17.8	1,174,924	-4.2	68,445	2.6	1,096,304	-6.7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순위는 2023년 수출액 기준으로 정렬

(홍삼 음료제품) '23년 수출액은 5억 3,881만 달러로 '22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최대수출국은 홍삼 조제품과 동일하게 중국이다. 그 외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 ● 홍삼 음료(제2202.99호) 수출동향

단위: 천불, %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81,658	6.3	89,519	19.2	538,810	11.9	94,442	5.5
1	중국	134,901	-7.2	10,640	62.6	178,555	32.4	14,256	34.0
2	미국	86,033	5.7	18,340	-8.5	80,391	-6.6	14,177	-22.7
3	베트남	68,578	54.7	3,084	156.6	61,325	-10.6	4,217	36.7
4	홍콩	15,121	21.6	39	-42.7	31,881	110.8	45	14.1
5	인도네시아	15,335	8.3	1,065	228.1	19,312	25.9	2,829	165.5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순위는 2023년 수출액 기준으로 정렬

#### (4) 홍삼 조제품 (제2106.90호)의 원산지기준



'23년 홍삼 조제품 주요 수출국 기준으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 주요 협정별 원산지기준

주요국가	적용협정
중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미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베트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 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 첫째

중국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해당 물품의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홍삼 농축액	1302.19	한국
벌꿀	0409.00	미상
건대추	0813.40	미상
정제수	2201.90	미상
중략		



주: 기재된 원재료 및 HS코드는 참조용임

**Check Point** 홍삼 조제품의 특성상 주원료들과 4단위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미국의 조합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단서규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제외세번으로 제1211.20호(인삼) 및 제1302.19호(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명시하여 해당 세번에 대하여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셋째

한-아세안 FTA의 조합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과 단서조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미 FTA와 공통적으로 제외 세번을 명시하여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기재된 세번으로 제1211.20호(인삼), 제1212.21호(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제1302.14호(마황(麻黃)으로 만든 식물성의 수액과 추출물) 및 제1302.19호(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홍삼 조제품 생산시 상기 열거된 원재료가 투입될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홍삼 농축액(제1302.19호), 벌꿀(제0409.00호), 건대추 (제0813.40호), 정제수(제2201.90호)를 혼합하여 홍삼 조제품 (제2106.90호)을 생산한 경우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홍삼 농축액은 단서조항에 기재된 세번으로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한다.

● 한-아세안 협정 원산지기준 유의사항

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홍삼 농축액	1302.19	한국
벌꿀	0409.00	미상
건대추	0813.40	미상
정제수	2201.90	미상
중략		

**Check Point**

- 단서조항에 기재된 세번으로 규정된
  - ① 제1211.20호(인삼)
  - ② 제1212.21호(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 ③ 제1302.14호(마황(麻黃)으로 만든 식물성의 수액과 추출물)
  - ④ 제1302.19호(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해야 함

주 : 기재된 원재료 및 HS코드는 참조용임

(5) 맺음말



종합해보면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상대국과의 협정에서 홍삼 조제품의 원산지 기준은 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세번을 제외세번으로 규정하여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일기준만 설정한 품목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으나, 꼭 역내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제한이 있다는 특징을 파악하면 원산지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삼을 주 원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본고의 내용들이 홍삼 조제품 수출기업 및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FTA 활용시 이해를 돕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고대해 본다.

